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美 노골적 한국산 철강 씨말리기...정부, 결국 WTO 제소로 맞불

[美 무역확장법 232조 압박 현실화 하나]
 美 "한국, 보조금 받은 포스코 제품 쓰는 비정상 시장"
 내년 232조 발동 땀 한국 연 3조~4조원 시장 사라져
 "통상, 외교·안보와 분리" 공감...靑서도 반대 안할듯
 무역협 "사후 조치보다 사전 대응으로 AFA피해야"

김우보기자 | 2017-12-25 17:25:40 | 기업 3면



지난 9월 정부와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미국이 4월 조사에 들어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보고서에 한국이 중국·베트남과 함께 '전면 관세 부과(그룹 2)'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미국은 최근 몇 년간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500%대의 관세 폭탄을 쏟아부으며 철강 주요 수출국에서 몰아내기도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폭탄을 부과하거나 수입물량까지 제한하는 초강력 무역제재다. 한국이 이 제재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정부 당국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조사보고서를 내년 1월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6일까지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 정의 및 개념

- 보조금(subsidy):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활동에 제공하는 금융·조세상 지원
-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생산물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부여된 보조금을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별관세
 - 상계관세는 상계조치의 일반적 수단이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에만 발동 가능



2. 이론적 배경

- 보조금은 시장실패로 인하여 바람직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당화 될 수 있음.
- 생산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이 감소하는 학습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은 정당화될 수 있음
 - 유치산업론은 국제경쟁력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보호를 해 줄 경우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및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



3. 국제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 GATT제6조는 수입국이 덤핑 및 보조금 지급 상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자국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별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
- 도쿄라운드 다자간 협상에서 관련조문의 구체적 해석과 운용절차를 규정한 보조금 . 상계관세협정문(Agreement 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s VI, XVI and XXIII of the GATT)이 채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적 보조금 지급과 상계관세의 남용, 그리고 이에 따른 무역 분쟁은 여전히 지속되어 왔음



4. WTO 보조금·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은 보조금과 상계관세 규율 강화를 목표로 함

(1) 보조금의 정의

-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지원. 직간접적 자금이전, 세입의 포기,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구매가 포함됨.
- 보조금의 종류를 금지와 상계가능(조치가능보조금) 2가지로 구분함.
 - 원래 협정에는 허용보조금이 포함되었으나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이후 의견대립으로 실효.



보조금, 상계조치

- 보조금협정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
 - 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financial contribution)가 있거나 또는 소득 또는 가격지지(income or price support)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
 - ② 혜택(benefit)이 부여된 경우
- 그러나 보조금 협정은 모든 보조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에만 적용



(2) 특정성(specificity)

- 객관적 기준이나 조건의 명시 없이 일부기업에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소수 특정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지칭
- 특정성이 있는 경우는 금지 또는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

(3) 금지 또는 상계가능보조금

- 무역왜곡효과가 명백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수출 또는 국내생산품사용을 촉진할 목적의 보조금은 금지보조금에 해당됨.
- 상계가능보조금이란 보조금지급이 상대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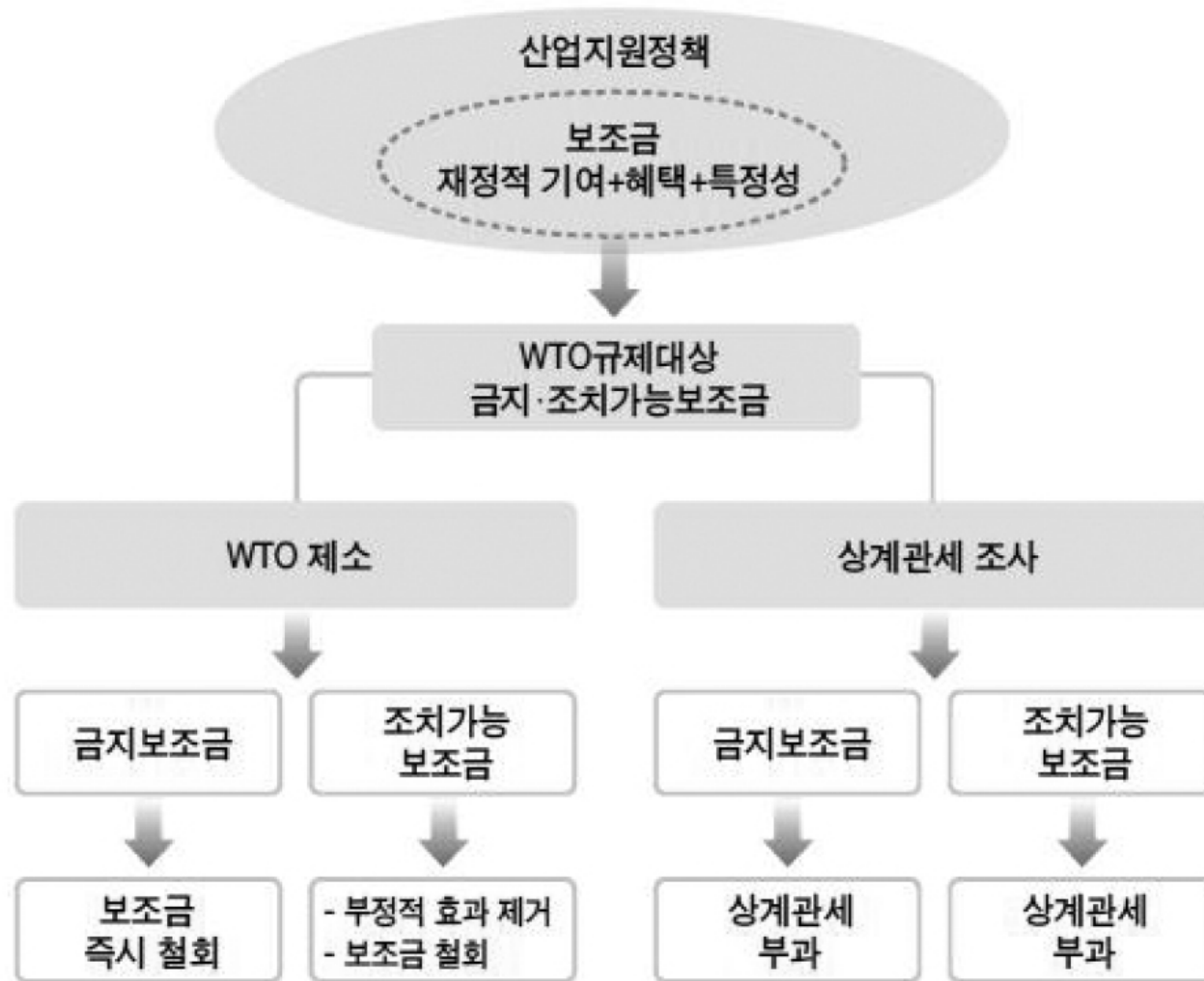


(4) 상계조치의 발동

- 상계조치를 취하려면 반드시 당사국간의 협의를 거쳐 분쟁해결기구에 패널구성을 요청하여야 함.
- 보조금지급물품의 수입과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제시 필요
- 보조금의 규모가 상품가액대비 1% 미만의 소액이거나 수입물량 또는 피해정도가 무시할 정도면 즉각 조사를 종결하여야 함.
-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적 긍정판결이 난 경우 잠정적 상계관세조치를 발동할 수 있음.



보조금, 상계조치





5. 평가 및 전망

- WTO SCM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협정은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함께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한다는 데 크게 기여
 - 그러나, 자국내 이해집단간 갈등과 국가간 갈등은 WTO 출범에도 불구하고 심화됨.
- 국제분쟁을 방지하려면 정부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정산업지원시 특정성 시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필요.
 - 최근 미국의 상계조치는 조사당국의 자료제출 또는 협력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부과.



보조금, 상계조치

- 향후 추가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기존협정의 불명확한 규율을 명확히 하고, 일부보조금을 추가허용할 것인가가 쟁점
 - 보조금의 적합성을 유연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대두
- 그러나, 보조금 기준자체의 완화여부는 불확실함.
 - 수산보조금은 환경분야와 보조금관련협상에서 동시에 처리
-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서 상계관세제도를 산업피해제도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임.
 - 산업피해구제기관의 위상 제고 필요
- 대외적으로 주요국의 보조금지급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1. Introduction

1.1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보조금이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산업 및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말한다.
- 보조금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켜 수출을 촉진하거나 수입을 억제하는 무역왜곡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정책당국이 제공한 각종 지원에 의해 피해를 입은 회원국은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상계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 상계조치: 상계관세로 알려진 추가 관세의 부과를 통해 이루어진다.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1.2. GATT Art. VI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 Art. XVI Subsidies(Section A. Subsidies in General),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Code, SCM Agreement

- SCM 협정 발효 이전: GATT Art. 6 & Art. 16 및 동경라운드의 SCM Code
- 보조금의 정의와 범위, 상계관세 조치의 발동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음
- GATT 규정 및 SCM Code의 개선 추진
- **UR의 SCM 협정:**
 - 보조금의 정의 포함, 특정성(specificity)의 개념 도입, 보조금의 범위와 기준 명확화, 상계관세의 발동절차 규정
 - **제조업 부문의 보조금만을 다룬다.**

1.3. structure of SCM Agreement

11부, 32개 조항과 7개의 부속서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2. Definition of Subsidy

2.1 fi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정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거나, 가격 및 소득지지가 있어야 한다.
-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지시를 받은 민간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정부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한다.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2.2. confers a benefit

-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 정부의 재정적 기여나 가격 및 소득지지가 아닌 정부의 조치, 그리고 비록 정부의 재정적 기여나 가격 및 소득지지가 있다 하더라도 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면 보조금 규율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3. Specificity

- 보조금은 특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금지되거나, 조치가능하거나, 상계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특정 보조금이란, 보조금이 지급이 국가내의 특정 기업, 산업, 기업군, 산업군에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4. Prohibited Subsidies

- 금지보조금: 수출보조금 및 수입대체 보조금

---->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수 있으며, 금지보조금인 것으로 판명되면, 동 보조금은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 제소국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5. Actionable Subsidies (serious adverse effects)

- 조치가능보조금: 제소국이 "해당 보조금은 제소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 부정적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보조금은 허용되며, 부정적 효과를 갖는다고 판명되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6. Non-Actionable Subsidies

- 허용보조금(조치불능보조금): 특정적이지 않거나, 특정적이더라도 연구개발보조금, 지역개발금, 또는 환경보조금 등은 허용보조금으로 간주된다.

----> 원칙적으로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제소대상이 될 수 없으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단, 국내산업에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회원국은 보조금을 지급한 회원국과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에 실패하는 경우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부정적 효과가 존재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효과를 제거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해 계획을 수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7. Countervailing Measures

회원국은 자국의 조사절차에서 국내생산자에 대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명된 보조된 수입품에 대해 상계관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8. Institutions

- 상계관세의 부과 요건:
 - (determinationa of subsidy): 보조금의 존재, 정도 및 효과의 판정
 - (determination of injury): 피해판정

- 조사는 국내산업의 제소, 서면신청으로 개시된다.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제소자 적격:

- 제소 신청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국내산업의 총 생산이 동종상품 생산량의 50% 이상인 경우 인정
- 제소 신청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국내산업의 총 생산이 동종상품 생산량의 25% 미만인 경우, 조사는 개시되지 않으나 특별한 상황에서 관계당국의 직권에 의해 조사 개시 가능

■ 잠정상계관세:

- 보조금이 부여되었고,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한다는 긍정적 예비판정이 내려진 경우, 잠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잠정조치는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적용될 수 없으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수출국 정부가 보조금을 중단 또는 삭감하기로 하는 경우, 조사절치는 정지 또는 종료될 수 있다.

- 보조금 조사는 다음의 경우 즉각 종결된다.
 - 상품이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않고 중개국을 거쳐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 수입품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수량 또는 그 피해가 무시할 정도로 적은 경우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긍정적 최종판정이 있는 경우,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상계관세는 차등적으로 적용 될 수 없다.
- 보조금의 조사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확정상계관세는 보조금지급을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과 범위내에서만 부과되며,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결된다.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9. Consider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계획에 보조금의 중요한 역할 인정
- 개발도상국은 수출보조금을 WTO 협정 발효일로부터 8년동안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고, 수입대체보조금은 WTO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동안 지급할 수 있다.
- 최빈개도국은 수출보조금을 금지할 필요가 없으며, 수입대체보조금은 8년동안 지급할 수 있다.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10.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 유사점:

- 대응 조치는 일반적으로 특별상쇄수입관세의 형태를 갖는다.
- 특정국의 수입품에 부과된다.
-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국내산업의 피해를 입증하는 조사가 개시된다.

■ 차이점:

- 덤핑: 사기업의 행위, WTO 반덤핑 협정은 사기업의 행위인 덤핑행위에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보조금: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은 보조금의 지급 및 보조금 지급에 취할 수 있는 조치 모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